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3. 20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22일 영등포구청장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23일
 - 다. 상정일자 : 1995년 3월 20일
- 〈제3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에 따라 타 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4조(직원의 정원)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1. 구의회사무국 : 27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대현)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 현행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제4조의 별표를 삭제하는 대신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총수를 27명으로 정하고,

2. 제5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3. 현행 제5조 제6조를 제7조로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

제출년월일 : '95. 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1994. 12. 31)에 따라 타 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제4조(직원의 정원)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1. 구의회사무국 : 27명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1994. 12. 31)

4. 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원의정원)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직원의정원)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	1. 구의회사무국 : 27명 〈별표〉 삭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를 삭제한다.

제4조(직원의 정원)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1. 구의회사무국 : 27명

제5조 및 제6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능직외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